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항 운영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항 안전 운영체계 유지 여부에 대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,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함(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 3 신설).
-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하거나,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1조).
- 공항운영자 등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,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 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5조의2 신설)

II. 검토의견

□ 유효성 검사주기의 기산일(안 제38조의2제1항)

개정안은 5년마다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을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개정안은 “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종료일”을 검사주기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검사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, 검사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할 경우 검사주기가 짧아질 수 있는 점, 유효성 검사와 그 결과를 통해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가 확인된 이후부터 검사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점에서, “검사의 종료일”이 아닌 “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”부터 검사주기를 기산하도록 수정함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38조의2(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)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<u>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</u>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(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<u>그 검사의 종료일</u> 을 말한다)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<u>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</u> (이하 “유효성 검사”라 한다)를 신청하여야 한다.	제38조의2(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) ① ----- ----- <u>공항운영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 <u>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</u> ----- ----- <u>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의</u> -----.

②·③ (생략)	②·③ (생략)
----------	----------

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정희)